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년 5월 8일

나. 발 의 자 : 윤종호, 김상조, 김인배, 김정곤, 박교상,
정근수(6인)

다. 회부일자 : 2017년 5월 8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5월 15일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2017년 6월 5일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윤 종 호 의원

나. 제안이유

- 구미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신설 및 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에서부터 분할발주 적극 검토(안 제5조)
- 표준시장단가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표준시장단가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의 공종이 많음
 - 표준시장단가는 최저가 낙찰제로 형성되며 이는 계속적인 공사비 하락으로 이어져 공사품질 저하를 가져옴
 - 국토교통부 예규('17.2.)에 의거 공사금액 100억 이상 적용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안 제7조)
 - 기존 계약 방식은 종합건설업체가 전체 도급 후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
 - 「지방계약법」 제2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
- 타 지역 건설업체로서 지역업체를 적극 수용한 경우 행정편의와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구미시에 소재한 영세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의 발주 참여 용이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이내에서 실적 및 시공능력을 평가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김 영 수

○ 본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 건설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분할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표준시장단가 적용제한, 입찰참가자격 완화 등을 통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을 극대화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